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58
----------	-------

발의연월일 : 2023. 9. 14.

발의자 : 김성원 · 이인선 · 최영희
이종성 · 박대수 · 이주환
태영호 · 김용판 · 지성호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무역조정(貿易調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엄격한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상담, 정보제공, 자금융자 등의 지원수단 중 당장의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운전자금 용자에만 몰리고 있어, 무역조정 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보다는 공급망 · 경제안보 · 기후변화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

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뿐 아니라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수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이 제도의 취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 나.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협정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뿐 아니라 향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6조).
- 다. 기존 지원수단 중 기업의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를 폐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되 제도전환 과도

기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존의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은 기술·경영 혁신지원으로 흡수·통합함(제5조의2 및 제8조 삭제, 안 제7조, 제9조 및 부칙 제2조).

라.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국민경제”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을 ““통상변화대응”이란”으로,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상조약 등”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한다.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

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역조정”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무역피해와 무역조정의”를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으로 한다.

제5조 중 “무역조정”을 “통상변화대응”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무역피해를 입은”을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으로, “무역조정의”를 “통상변화대응의”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각한 피해”를 “실질적 영향”으로, “피해가”를 “영향이”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제6조제6항 중 “심각한 피해”를 “실질적 영향”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 · 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 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을 “서비스 무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 경영 혁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 · 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을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 · 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 · 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 · 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 · 인력 · 기술 · 판로(販路) · 입지(立地) · 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 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 ·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통상변화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을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영향을 받은 통상지원대상업종”으로, “무역조정의”를 “통상변화대응의”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나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로 하며, 같은 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제12조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13조의2 중 “무역피해”를 “통상영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로,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역조정”은 “통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으로,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통상대응지원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의”를 “통상변화대응의”로, “종합적”을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을 “통상변화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 또는”을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에”를 “통상변화대응에”로 한다.

제21조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역조정지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1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u>자유무역협정의 이행</u>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u>국민경제</u>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p>	<p><u>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u>, ----- ----- ----- ----- <u>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u>----- ---- <p>제2조(정의) -----</p> <p>-----.</p> <p>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u> 2. <u>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u> 3. 그 밖에 <u>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③ 삭 제</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무역피해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u>(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5조(조사·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u>무역조정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u>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 -----.</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통상변화대응</u>----- 2. <u>통상변화대응</u>----- - 3. ----- <u>통상변화대응</u>----- ----- --- <p>④ ----- ----- ----- <u>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조사·연구 등) ----- ----- <u>통상변화대응</u> ----- ----- ----- -----.</p>
--	---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삭 제>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
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
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
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통상대응지원업종

-----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
----- 통상변화대
응의 ----- “통상
변화대응지원기업”-----

-----.

②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p><u>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기업이 <u>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u></p> <p>2. 기업이 <u>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u></p>	<p>-----.</p> <p>1. ----- <u>실질적 영향</u>----- ----- ----- ----- ----- ----- ----- ----- ----- ----- ----- ----- ----- ----- <u>영향이</u> ----- ----- ----- ----- ----- ----- ----- ----- <u>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u> --</p> <p>2. <u>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u></p>
---	---

일 것

- | | |
|--|--|
| <p>③ 삭 제</p> <p>④ (생 략)</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 조정지원기업</u>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u>심각한 피해</u>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u>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u>, <u>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u> 및 <u>서비스 수입의 범위</u>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7조(<u>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u>)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기업</u>에 대하여 <u>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 및 입지(立地)</u>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p> <p>⑥ -----

----- <u>실질적 영향</u>--
----- <u>서비스 무역</u>--

-----.</p> <p>제7조(<u>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u>)
· 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의 기술
· 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p> |
|--|--|

<p><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u></p>	<p><u>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u> <u>· 입지(立地)·해외진출전략</u> <u>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u> <u>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u> <u>알선</u></p> <p><u>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u><삭 제></u></p> <p><u>②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u> <u>----- 필요한 조치를 -----</u> <u>-----.</u></p> <p><u>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통상변화대응-----
-----.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p>“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 ----. ③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u>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u> ----- ----- -----. ④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u>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u> ----- ----- -----. ⑤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 ----- <u>통상</u> <u>변화대응계획</u>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 -----</p>
--	---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
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
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
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원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 통상변화대응지
원기업 -----

②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p> <p>가. 삭 제</p> <p>나. <u>무역조정지원기업</u>에 납품을 하는 기업</p> <p>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p> <p>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u>무역조정지원기업</u>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u>무역조정지원기업</u>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p> <p>③ 제6조에 따라 <u>무역조정지원기업</u>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u>무역조정지원기업</u>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p>	<p>2. ----- ----- -----</p> <p>나.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p> <p>다. <u>통상조약</u>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p> <p>라.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의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으로 -----</p> <p>③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으로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 ----- ----- <u>통상변</u></p>
---	---

<p>따라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u>무역조정지원기업</u>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요·직업교육·창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p>	<p><u>화대응지원근로자</u>----- ----.</p> <p>④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 -----.</p> <p>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 <u>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u>에게 -----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u>가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u>----- ----- -----.</p>
---	--

다.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u>무역피해로</u>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u>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u>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 <u>통상영향으로</u>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u>통상대응지원업종</u> -----.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u> 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 <u>통상대응지원업종</u> -----.

<p>② ~ ⑥ (생 략)</p> <p>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u>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u> 및 <u>제7조</u>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은 “통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p> <p>⑧ · ⑨ (생 략)</p> <p>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u>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u>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제7조</u> ----- -----.</p> <p>--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 ----- <u>“통상변화대응계획”</u> -----.</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 ----- <u>통상대응지원업종</u> ----- ----- ----- ----- ----- ----- ----- ----- ----- ----- -----.</p>
--	---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그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②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

1.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2. (현행과 같음)

<삭 제>

<p><u>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p> <p>제19조(보고) ①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지원</u> 또는 <u>통상피해대응지원</u>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무역조정지원기업</u>, <u>통상피해지원기업</u>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 또는 <u>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u>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p> <p>제20조(출입·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계획</u> 또는 <u>통상피해대응계획</u>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p>	<p>제19조(보고) ② ----- <u>통상변화대응지원</u> 또는 -----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u> 업----- ----- ----- -----. ③ -----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u> -- ----- ----- -----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출입·검사 등) ① ----- ----- <u>통상변화대응계획</u> ----- -----</p>
--	---

<p>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무역조정지원기업</u>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u>무역조정에</u>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 ----- ----- <u>통상변화대응에</u>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u>무역조정지원기업</u>, <u>통상피해지원기업</u>,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 또는 <u>통상피해지원근로자</u>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1조(청문) ----- ----- ----- <u>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u>, <u>통상피해지원기업</u>, <u>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u> ----- ----- -----.</p>
<p>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업무의 위탁) ① ----- ----- ----- ----- -----.</p>
<p>1. · 2.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p>

<p>4.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p>	<p>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u>제25조(별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p><u>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 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u></p> <p><u>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u></p>
--	--